# 1.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
| 합 계 | 448,411,170 | 13,452,335 |
| 일반회계 | 405,208,985 | 12,156,270 |
| 특별회계 | 43,202,185 | 1,296,066 |
| 기타특별회계 | 43,202,185 | 1,296,066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,460,428 | 73,813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5,909,676 | 477,29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16,537 | 18,496 |
|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| 8,421,071 | 252,632 |
|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650,895 | 19,527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3,757,716 | 112,731 |
|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| 130,336 | 3,91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1,285,713 | 38,571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| 5,050,162 | 151,505 |
|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| 79,807 | 2,394 |
|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| 4,279,804 | 128,394 |
| 원외탕전원특별회계 | 560,040 | 16,801 |

제 2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17,036,511천원이며, 재해·재난 예비비 10,101,351천원을 포함한다.

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